

때로는 전공서적보다 가벼운 책을 읽는 가운데서 얻는 것이 클 때가 많다. 일전에 어떤 책에서 고독에는 피해야 할 고독(외로움), 바람직한 고독(반성), 참아야 할 고독(인내)이 있다는 것을 읽었다.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어서 도시나 아파트의 생활이 무미건조해서 변화 없는 오랜 주부생활에서 느끼는 고독 따위가 피해야 할 고독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인간애가 서로 통하는 가운데서 회피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너무나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어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를 끈질긴 노력에 의하기보다는 폭발적이고 참나적인 행동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벌거숭이가 되어 거리에 뛰쳐나온다든가 아니면 황금만능주의 물결 속에서 절제 없는 욕물적인 생활에 매몰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합리주의, 물질지상주의

도 필요할지 모르나 비합리적, 비물질적인 애정의 세계가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현대인은 정보화사회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조직의 일부로서 너무나 바쁜 생활에 쫓겨 인간정신과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 기계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자기의 내적세계를 살펴보고 지나온 인

생을 음미할만한 홀로 생각하는 한적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반성하는 바람직한 고독이다.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여 생의 깊은 곳을 더듬어야 한다.

한날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허무한 인생에 비추어 볼 때 치부와 권력, 생과 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인식하여 인생을 보람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부산 모녀살인사건, 카이스트(KAIST)교수 및 학생자살 등등. 이 모든 것이 인간정신의 공동화라는 공해의 산물이 아닐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수심(愁心)에 싸이고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이 쓴맛을 옹글게 받아들여 씹어 삼킬 수 있는 참을성 있는 고독이 인간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지혜로워 지고 슬기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긴 안목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시적인 불행은 못이겨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이 세가지 고독을 터득하는 가운데서 현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이를 지배할 힘찬 인간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수성논단

객원논설위원

경동대 교수(사회복지경영학부장)



고독

이선국 칼럼

칼럼위원, 시인(죽왕면장)



길 위에서 만나는 세상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 선용을 위한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러는 치밀한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 즐기는 여행도 있지만 무작정 떠나는 경우도 있다. 또 여행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떠들썩하게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 홀로 호젓하게 즐기는 여행도 있다. 이렇게 걸거나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철도, 비행기 등 다양한 이동수단과 방법에 의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행(旅行)이란 사전적 의미로 일이나 유람의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나가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목적지가 없는 도보여행 또는 산·들과 바람 따라 떠나는 사색여행을 트레킹(Trekk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어원은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정처 없이 집단 이주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전문 산악인들이 개발한 네팔의 히말라야 등 험한 산악길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트레킹이라는 용어로 알려졌다. 이 트레킹은 등반과 하이킹의 중간형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장거리 야영 여행을 하는 백 패킹(back packing)과 구별된다. 하루 도보거리는 15~20km이며, 산의 높이를 기준으로 5,000m 이

상 등반, 그 이하는 트레킹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오지탐험 등 모험적인 트레킹을 중시하는 외국과 달리 역사문화 유적지나 관광 명소를 더듬거나 이색 문화체험과 섬 여행 등 다양한 이야기가 꽃처럼 피어있는 테마트레킹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도 최근의 추세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고 교통이 불편했던 옛날에는 도보여행이 대부분이었다. 신라시대의 화랑도는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성지를 찾아 순례하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수행하는 기회로 삼았다. 고나리뱃집에 짚신을 매달고 들길과 산길을 건너 유람하던 것이 바로 옛사람들의 여행 풍경이다. 그나마 생활형편이 나은 양반들은 당나귀나 말 등에 얹혀 두루 산천을 주유하고 그 풍류를 즐겼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나라 트레킹의 효시가 아닌

가 생각된다.

불교에서는 한 수행자가 만행(萬行)을 떠나는 것을 운수행각(雲水行脚)이라고 한다. 여기서 행각이란 수행자가 수행을 위해 여러 곳을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안거(安居)가 끝난 후 뜬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가고 오는데 걸림이 없고 한 곳에 머무름이 없고 조금도 얽매임이 없이 선 지식 범위에 들어가 수행하는 방법으로 안거 기간동안 전념했던 공부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실제 확인하는 또 다른 수행의 한 방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행은 유람이라는 말뜻과 같이 길을 따라 걸거나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정경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한서(漢書)의 조중국전에서 유래된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고사 성어의 의미와 같

이 새로운 경험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길을 떠나는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남편과 운치가 넘치는 길을 따라 전국을 일주하는 것, 쪽 뺨은 고속도로와 다른 매력을 지닌 국도와 크고 작은 지방도, 그리고 굽은 길을 따라 유람하는 것, 저마다 다른 길이 품고 있는 소소하지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그 맛이 쏠쏠하다고 많은 여행가들은 말한다. 가는 곳마다 다다른 길이 품고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부담 없이 느낄 수 있고 생각을 다듬을 수 있는 것이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아닐까.

이제 밀어두었던 여행을 시작해야겠다. 길섶 노란 개나리꽃길을 따라 소풍을 가듯 피곤한 일상에서 지친 마음의 위로를 찾아 길을 떠나자. 구름이 흘러가듯 바람 따라 들길과 산길을 거슬러 떠나는 여행, 길지도 쉽게 다닐 수 있고 비용도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여행,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떠나는 아날로그적인 여행을 제안하고 싶다. 산사의 풍경소리 들리는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서서 잠시나마 고단한 삶을 되돌아보듯 느리게 아주 느리게 가는 시간 여행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문 저희 누나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험잡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지요?

답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인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인·설명 의무규정은 부동

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개인의 소개로 일단 성립된 부동산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누나와 집주인(매도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귀하의 누나가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누나는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